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7 August 2018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Profit-Split Method Should Be Used Sparingly: IRS Official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5 pg. 547\)](#)

미국 국세청(IRS), 이익분할방법 사용 자제 권고

IRS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이익분할방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이익분할방법에 대해 통합된 특수관계거래의 특정 손익을 배분해야 할 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RS의 국제조세(IRS Office of International Tax Counsel)장관인 Chris Bello는 지난 7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인연합회의 이전가격 컨퍼런스에서 OECD 가이드라인의 이익분할방법을 두고 다른 비교 가능한 거래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전가격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익분할방법은 다국적 그룹의 특수관계회사들간의 상대적인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할하는 방법이며, 이는 비교 가능거래의 분석을 토대로 자산이나 용역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일방적 방법과 대조됩니다.

이전가격정책은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과 개별 자회사를 독립적인 실체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익분할방법의 사용을

경계하는데, 이는 기업의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과세당국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허여하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지침

OECD는 지난 6월 21일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익분할방법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당사자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거나, 사업 운영이 너무 통합되어 각 거래당사자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각 거래당사자가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공유하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OECD 6개국(Working Party No. 6)중에서도 미국을 대표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던 Bello는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을 단순히 '모든 다국적 기업은 부담위험을 공유하며 사업 운영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High Bar

또한 Bello 장관에 따르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몇몇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익분할방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익분할방법이 어떠한 경우에나 오용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몇몇 국가들이 주장하려는 것과 실제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조리'에 관한 논쟁

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이익분할방법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들과의 협상 및 타협 또한 반영되어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비교대상회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국가들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가능회사의 기업정보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주장합니다. Bello는 “특정 사례에서 좋은 비교가능회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미국 내에서도 흔한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불합리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타협안

가이드라인 최종본은 이익분할방법의 사용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이익분할방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다른 국가들의 입장 간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Moves to Tighten Thin Capitalization Rule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6 pg. 603)

호주 국세청(ATO), 과소자본세제 강화

호주는 법률 입안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손금인정 부채의 과도한 수준을 이용한 역외 소득이전을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재무장관 Scott Morrison에 의하여 8월 1일부로 공개된 법안은 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의하여 너무 낮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기업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치에 맞추어 과소자본화를 위한 자산의 가치평가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세무목적상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없습니다.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은 OECD에 따르면 조세목적으로 보고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본 대비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회사의 상황을 말합니다. 각 국가의 과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커지며,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사유

새로운 자산 평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호주 정부는 현존하는 과소자본세제가 기업에게 특정 자산을 인식하고 회계 기준과 일치하는

일반적 규정을 준수하기 보다는 특정 상황에 있어 상이한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도록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사면제(safe harbor)대상 부채 금액한도 내에서의 추가적인 부채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산 재평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재평가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부채관련 손금을 신고하는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한 자산 재평가의 엄격성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자산 평가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동법 시행 이후 모든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의거한 자산가치를 토대로 세무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2018-2019 연방 예산안에서 공개된 초안에서 포함된 또 다른 조치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호주의 연결법인과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MEC (Multiple Entry Consolidated)그룹은 모두 과소자본 목적의 대외 및 대내(outward and inward) 투자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7월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호주 정부에 따르면 대내 투자자가 대외 투자자만들 대상으로 하는 자산 기준 테스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과소자본세제를 통합하여 호주 정부는 해당 세제가 차후 4년간 240백만 호주달러(177.8백만 달러)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8 월 17 일까지 공개 초안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New Intercompany Pricing Rules Could Hurt Japanese Car Industry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5 pg. 561)

일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신규 특수관계자간 가격책정 규정

일본 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OECD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특수관계자간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중과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Bloomberg Tax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2019 재정 개혁을 위해 자국의 이전가격 규정에 OECD가 도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 "HTVI")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일본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HTIV에 대한 접근법 및 2019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이전가격 세제 개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HTVI 접근법이 도입될 경우, 무형자산의 상용화 이후 평가된 가치(after-the-fact outcome)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권한은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 특히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OECD는 지난 6월 21일에 BEPS Action 8에 따라 HTVI 접근법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감사함으로써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과 관련된 특수관계자간 가격책정 제도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무형자산의 상용화 이후의 사후 평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성차 제조업자

일본의 완성차 제조업자들은 자동화된 승용차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일본 본사에서 미국 내 현지 자회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HTVI 접근법이 일본의 법규에 포함될 경우 향후 이러한 데이터 전송이 포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 Atsumi & Sakai의 대변인인 Matsuoka은 일본의 이전가격 규정에 따르면, 주로 정상가격에 초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계 모기업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위치한 자회사에 무형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초안한 계약은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HTVI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일본 정부는 양도된 무형자산이 지난 3년, 또는 5년 이내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장부금액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자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자들 또한 일본에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외 특수관계회사들에게 종종 이러한 무형자산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현재 일본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HTVI 접근법이 도입될 경우, 무형자산의 구매, 또는 이전에 대한 일회성 지급은 관련 현금흐름의 향후 예측과 적절한 할인율을 포함하는 양도 시점의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과세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거래

일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세무 전략과 중앙 집중적 관리 목적으로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Bloomberg Tax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본 기업들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이 급증하면서 외국계 무형자산이 일본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지난 5년간 일부 일본계 모기업들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공장들로 무형자산을 이전해왔는데, 이는 모기업들이 제조 관련 무형자산을 해외 제조법인에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과제척기간

현재 일본의 이전가격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6년이지만, 국외 이전 무형자산을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본 과세당국은 8년 전에 이전된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들은 무형자산의 상용화 이전 개발 단계기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Ukraine Extends Duration of Intercompany Pricing Agreement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5 pg. 560\)](#)

우크라이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승인기간 연장

우크라이나는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7월 12월부터 개시되는 법령 제518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에게 5년간의 일방APA, 상호합의, 또는 다자간APA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크라이나의 APA 최대 적용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APA 사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다국적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과세당국(State Fiscal Service)간에 APA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타결된 APA 사례는 없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최대 5년까지 국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과세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금번 APA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최대 5년까지 미래 과세시간 동안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제2조는 미래에 발생될 거래가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과세당국과 주요 납세자간의 APA가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4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가 위치한 과세 관할권내의 과세당국은 적용 가능한 양국 조세협약에 따라 APA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0조에 따르면 APA가 우크라이나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추가적인 세무조사 및 회사와 과세당국간의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의 다국적기업이 두 개 이상의 국가와 APA를 체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자간 APA를 통해 복잡한 국제 거래를 수행하는 대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PA 적용

APA체결을 위해서 각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신청서를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 3년간 재무제표

- 현재 진행중인 조세 분쟁에 대한 설명
- 특수관계자간 거래 당사자가 해외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문서

또한, 납세자는 APA체결 이전 언제라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